



제 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78호)

202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역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생계비계좌 개설 및 압류금지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준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1. 1.

다. 회 부 일 : 2024. 11.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한 예금은 압류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실무 단계에서 최저생계비로 특정할 수 있는 예금 판단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모든 예금을 일단 압류하고, 이후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해제 받아야 하는 상황임.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예금이 압류되고, 이를 해제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채무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해당 계좌에 최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및 제10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역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생계비계좌 개설 및 압류금지 (안 제46조의2 및 제108조의2 신설)

개정안은 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예금자(자연인을 말함)의 요청이 있을 시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만을 예치할 수 있는 계좌(이하 “생계비계좌”)를 예금자에게 개설해 줄 수 있게 하고, 생계비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46조의2(생계비계좌) ① 지역조합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u> <u>② 지역조합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은행</u>

현행	개정안
<신설>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지역조합은 생계비계좌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④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108조의2(생계비계좌) ① 중앙회는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② 중앙회는 <u>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u> ③ 중앙회는 <u>생계비계좌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u> ④ <u>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u>

「민사집행법」 제246조¹⁾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

1)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 7. (생략)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저생계비를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월 185만원을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 최저생계비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 상호신용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채무자의 예금계좌 중 어떤 계좌가 최저생계비계좌에 해당하게 되는지를 판단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채권 가압류 또는 압류 결정 시 채무자의 모든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하고 있어 채무자가 민사집행법령에 따른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예금액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압류명령을 일부 또는 전부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역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생계비계좌 개설 및 생계비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최저생계비의 채권에 대한 압류금지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개정안은 이를 보충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최저생계비 계좌 개설에 관한 사항을 어느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한 것인지, 즉 개정대상 법률의 선택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산림청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이에 더하여 안 제108조의2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최저생계비
계좌 개설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 범위²⁾에
는 일반인에 대한 신용사업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해야 함.

참고로 개정안과 같은 입법취지를 담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³⁾, 「수산업협동조합 일부개정
법률안」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2) 제108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지원 사업
가. ~ 카. (생략)
2. 임업경제사업
가. ~ 타. (생략)
3.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다. 회원의 예탁금 수납
라. 내국환과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업무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업무 대행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5. 공제사업
6. 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운용
- 6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 6의3. 산림분야 정보기술 용역 및 시스템 구축사업
- 6의4. 산림 분야 학술·연구용역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3) 의안번호 2205179, 2024.11.4. 회부

4) 의안번호 2205177, 2024.11.4. 회부

문 의 처
02)6788-5423